

【기본정책 서식예시】

한반도미래당 기본정책

한반도미래당 기본정책은 발기취지문에서 언급한 유엔세계재활기구가 추구하는 세계정부실현에 관한 유엔세계재활기구 (UNWRO) 세계정책을 뿌리로 한다.

I. 유엔세계재활기구 세계정부실현

첫째,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초가 다져지는 가교역할로써, 인류의 세계 평화와 세계인권의 뿌리인 인간존엄성을 위하여, [세계장애인인권선언]을 기초한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 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를 DMZ 및 서울에 유치, 명실상부한 세계인권국가의 초석마련과 국가적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중심 국가로 도약의 계기가 정립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드높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둘째,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중심한반도를 영도해나갈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한국유치를 통해 유엔 및 유엔세계재활기구와 연계된 세계금융특수국가(세계금융지하경제_세계금융스위스포럼; UNGFFS Policy & Schedule. <UNWROESC-UNGFFS-post 2015 Study Published>)의 유엔세계재활기구 산하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유치하여, 국제금융권을 제도적으로 국내금융권에 편입시킴으로써, 오늘날의 국내금융산업구조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제금융경쟁력 상실을 보완함은 물론이고, 공적자금 손실부분과 부실한 국내외채무상환에 대한 원활한 국가재정을 마련한다.

셋째, 인간생활의 기본생존권인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증진에 힘쓰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역량의 결집을 통해 한반도 주변환경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태적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사회상을 지향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예지함에 있다.

II. 유엔세계재활기구 세계정책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가 기초해 온 복지와 경제를 통해 세계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와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글로벌화는 세계장애인복지경제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세계장애인인권과 세계복지경제를 통해 환태평양의 안정과 미래성장의 핵심과제는 인류미래를 위해, 세계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세계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혁명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세계각국의 소외된층과 세계장애인인권 그리고 세계재활과학(WRS) 산업으로부터 생성되는 세계복지경제가 결합된 국제협약의 범세계적 복지경제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세계중심한반도를 영도해나갈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한국유치를 통해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유엔본부 및UNWRO 유엔본부 산하 22개분야 총괄 사무국을 수립시킨다.

둘째. UNWRO 산하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_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Bank) 한국유치를 통해 세계금융시스템을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세계경제통합시대를 이끌어내는 세계실용주의(세계경제통합자본주의) 완성의 세계금융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셋째. C4I 최초이론을 인류에 권유하고36년간 구축해 놓은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세계우주대전략의 세계정책 중 우주시대개막을 지구재난대처시스템 구축방안 코어시대를 비롯한 한미간의 세계우주개발계획에 따른 TRUMP'S SPACE X TRUMP'S SPACE 5G-5GHz-5130CODE X 세계위성통신망시스템 우주그물망 구축과 연동된 세계위성통신망시스템SUNBOOKCAP 통합운영지휘체계로부터 우주시대개막 진입과정에서 미국TRUMP'S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 윤석열정부의 국가우주위원회 미래우주경제로드맵] 아젠다에 대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참여시킨다.

넷째.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의 세계재활과학(WRS) 세계정책과제 중에 우주공간위성계획일환인 세계장애인의 "우주주거환경개발"을 위한, 우주화성정착이주스토리텔링단지조성을 "한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유치에 대한 협력요청을 구현함으로써, 한국, 대구광역시가 세계최초의 우주인류도시로 번영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세계각국의 소외된 계층과 인류의 지구재난 및 세계재난기금으로 사용될 5세대/5GHz 인류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해양우주공간 5GHz/130dBm 주파수대역의 복합변조로드인 세계위성통신 무선복합통신체계인 세계위성모바일폰(일명: SEAgod Mobile Phone)시대 개막에 따른, 한국형, 청년창업사회환원성투자순환기금 워드드림뱅크시스템(withDream Bank System)을 설립하여, 고급두뇌IT 10만 일자리창출을 시도하여 불투명한 한국미래에 새로운시대를 구현한다.

여섯째, 국가적통일구도는 국방경제의 기초인 통일비용 및 이와관련된 제반 군축산업 인프라경제의 다원적 차원에서부터 해결방안이 모색한다. [한반도통일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통일비용 창출의 펀드조성은 유엔세계재활기구 산하 세계시장경제가상공간플랫폼연맹(WFMVP; World Federa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Virtual space Platform)을 한국, 용산(한강지역)유치를 통해, 전액 "세계공동기금"으로 대처한다.

일곱째. 미국의TRUMP'S READY FOR ACTION 꿈을 함께하는 세상(withDream)의 한반도평화공동체를 위한, 의식혁명캠페인을 통해 UNBOOKCAP 세계위성통신항법시스템과 통합운영지휘체계의 제5세대 세계위성통신모바일-폰의 중점분야인5GHz 주파수대역(Type_SG-CDMA/SDMA-130dBm-5GHz-18 0001k)을 통한 5G-5GHz-5130 Code 원-사이클 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를 구축한다.

여덟째. SUNBOOKCAP 세계위성통신항법시스템 통합운영지휘체계분야에서SUNBOOKCAP 세계위성통신5G체계5130코드 정책을 통해 농업분야, 우주과학분야, 교육분야, 문화예술분야, 생명과학분야, 대체에너지분야, SUNBOOKCAP 세계위성통신항법시스템 통합검색플랫폼분야, IT 정보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 활용한 SUNBOOKCAP 플랫폼 온-오프라인 기반의 세계적인 통합검색포털 플랫폼 기반구축 서비스 적용을 활용한 5차산업과 연계하여AR/VR 메타버스세계물류유통신경 공급망구축방안의 적용을 확대해 구현한다.

아홉번째. 세계장애인의 복지경제와 재활과학산업기술이 연계된 1백만 일자리창출에 세계각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21세기 과학은 최첨단 세계재활과학산업(WRSI)의 시대이다. 세계재활과학은 인류가 성취해야 할 글로벌차원에서 공동의 선의 이념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세계각국들의 국가산업경제의 중추적 아젠다인 세계재활과학산업(WRSI)으로 부

터 파생되는 최첨단 우주과학 및 생명공학의 4T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환경(ET) 및 극미세기술(NT)] 등과 연계된 범세계적 협력방안의 연대를 통해 세계각국의 국가기반산업인 실리콘밸리를 형성시켜 나갈 것이다. 이로써, 공동의 선을 지향한 고부가가치의 재활과학기술(RST)의 응용으로, 복지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창출시킬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재활과학은 환태평양시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우주항공산업의 집약기술이다.

열번째. 세계경제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인프라프로그램 운영이 절대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설립이 필히 요구된다.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과 198개국의 다양한 세계금융산업과 연계하여 세계적 복지금융아젠다로 격상시켜, 세계금융이 유연하게 통합운영될 수 있는 세계복지경제 인프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세계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를 통해 인간존엄성이 보호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대한 통합기능을 부연시켜 나갈 것이다.

열한번째. 상기의 첫째(항)에 준거하여 세계중심한반도를 영도해나갈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한국유치를 통해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유엔본부 한국유치할 것이다. 이는 곧, 유엔도시가 조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가 기초한 [한반도통일경제지도]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한반도안정은 물론이고, 환태평양시대에 있어서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세계장애인정책과 연계된 첨단 세계재활과학(WRS)은 세계각국이 추구하는 세계장애인인권과 세계복지경제를 통해 조성될 국가산업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열두번째.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세계정책中 발취 세계중심한반도] 전라남도 끝단, 서해에서 유라시아까지 영토확장! 서해유라시아해저도시건설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해역확대방안 발표대강. UNWRO 유엔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구축으로부터 한국 전라남도 끝단, 서해와 연계시켜 UNWRO의 기초설계조감도인 전라남도 끝단. 상태도-하태도-만재도-가거도 3억평방규모 세계해양복합해저도시 건설을 통해 유엔국제해양법상의 해역의 국제정세대변혁의 한국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에 대한 확대재편성된 세계중심한반도의 통합시대인 인류미래도시의 모습을 보다.

열세 번째.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세계우주대전략, 세계각국 우주군창설 등 우주군이 움직인다! 인류미래세대의 지구재난대처를 위해 지구재난대처시스템구축방안 구축시대에 필연성인 우주선 등 우주산업추진체 군산복합체(국방경제학) 분야의 우주산업발전과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_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Bank)을 통해 막대한 우주산업개발경제력(세계국방물자)에 필요한 세계금융지원에 대한 세계금융회의로부터 세계금융시스템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세계경제통합시대를 이끌어내는 UNWRB CODE 시스템체계의 해외자금확보방안구축을 비롯한 세계식량곡물공급프로그램과 직결된 세계산업경제친환경중수소에너지시대가 개막된다. 필리핀을 기축으로 필리핀-미국-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3국체제로 1백년간 필리핀수리가오지역 친환경중수소에너지공동개발 및 그와관련된 필리핀수리가오지역 해저도시건설로 인류미래시대는 중동국가들의 편중된 세계권력과 세계경제력을 누렸던 석유산업시대는 급격히 저물고, 세계경제지도는 재편된다.

열네 번째.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세계금융기구와 협의하여 한국 서울도심 또는 대전광역시도심에 SUNBOOKCAP 20만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TRUMP'S SPACE X TRUMP'S SPACE 5G 5130CODE X 세계위성통신항법시스템의 우주그물망의 플랫폼 속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SUNBOOK과 구글(Google's)의 세계청년창업뉴딜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의 융복합체인 [유엔세계식량 곡물프로그램플랫폼거래소, 유엔세계융복합유통물류 및 세계면세센터, SUNBOOKCAP 세계위성통신항법시스템 운영지휘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유통물류시스템[SUNBOOKCAP 인프라위성도시]를 건설한다.

열다섯 번째. 제주마라도와 제주지역(70만평규모)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태평양해양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정보센터건설. 즉, [재난구조용지피에스(GPS) 단말기의 주파수대역±130dBm 주파수확장변조 복합멀티기능시스템센터 및 해상위치추적시스템(GPS+네비세이션+119자동항법계측장치)를 통한 긴급구조시스템 대응센터]를 건설한다.

Ⅲ. 유엔세계재활기구 세계정책 프로세스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유엔세계재활기구 세계금융스위스포럼(UNGFFS Policy&Schedule)은 198개국이 참여하여 유엔세계재활기구 산하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을 한국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곧 세계금융설립 9개분야 77세션 307개프로젝트 중점과제로 구성되며, 지구재난과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한 세계경제정책과 인류공동체의 지하경제자산운영을 위한 198개국을 파트너십으로 구성될 유엔세계재활기구 산하 유엔세계재활은행 세계금융시스템에 대한 BIS, SWIFT CODE 등 세계금융회의의 워크숍 계획(UNGFFS Policy NFC tag)인 것이다.

세계금융스위스포럼에서 개최된, “UNWROESC-UNGFFS-post 2015 Study Published”의 9개분야 307개프로젝트(연구논문)는 제77세션으로 구분되며, 발표된 모든자료는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설립기초의 규정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미래당이 추구하는 세계금융지하경제는 단순한 경제이론이 아니고, 198개국 등 세계각국의 세계금융을 “원-싸이클”로 통합운용 가능한 세계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세계금융스위스포럼 개최를 통해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산하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_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Bank) 창설준비에 관한 미래의 세계경제 프로세스지침서이다.

한반도미래당은 이를 기반으로 유엔세계재활기구가 기초한 세계중심한 반도의 한반도통일경제지도 완성을 통해 한반도통일과 닥쳐올 한반도 위기라는 미래세상을 대처하고 개척하는데 그 총체적 목적이 있다.

한반도미래당

당 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한반도미래당(FKPP, 약칭: 한미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반도미래당(FKPP)은 발기취지문에 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계승하여, 인간존엄성과 가치의 세계장애인인권선언을 근본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구성)

- ①한반도미래당(FKPP)은 중앙당, 시, 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중앙당은 수도에, 시, 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 ①정당법에 따라 당원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입당, 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

- ①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한다.
- ②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

- ①책임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지역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②권리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의무)

-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 당규를 지킬 의무
 2.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3.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4.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5.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6.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7.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 ②의무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당비납부 및 권리)

- ①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당비납부 및 권리에 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포상)

-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제10조(징계)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 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11조(구성)

①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당원인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각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 소속 시, 도지사
5. 중앙당 사무총장
6. 당 소속 자치구, 시, 군 자치단체장
7. 당 소속 시, 도의회 의원
8. 당 소속 자치구, 시, 군 의회 의원
9. 시, 도당 위원장

②각 시, 도당 대의원 정수는 책임당원으로 하며, 시, 도당 위원장 추천으로 임명한다.

③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정기 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 정기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대의원 임기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전당대회 대의원 결원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⑥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기능)

①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능은 최고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소집)

- ①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임시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④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임원)

- ①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 ②전당대회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대표최고위원 선임한다.
- ③대표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역임한다.
- ④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정기 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 정기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 ①제40조(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 ②가부동수일 때는 대표최고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전당대회 준비위원회)

- ①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대표최고위원

제17조(지위와 권한)

- ①대표최고위원은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 ②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 2. 최고위원의 지명
 - 3. 주요 당직자의 추천과 임명
 - 4. 당무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 5.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 6. 기타 당헌 및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 ③대표최고위원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대표최고위원의 선출)

- ①대표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하고, 대표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지명토록 한다.
- ②대표최고위원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표최고위원 선출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최고위원의 선출)

- ①최고위원은 제18조 제1항의 전당대회 선거에서 최고위원을 지명토록 한다.
- ②최고위원 후보자가 2명 미만일 경우, 잔여 정원은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당대회 또는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지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최고위원의 정수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임기)

- ①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권한대행)

- ①대표최고위원이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협의를 통해 지명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자문 및 보좌기관)

- ①당무에 관한 대표최고위원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상임고문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②대통령후보 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 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후보로 지명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대표최고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 ⑤대표최고위원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대표최고위원 직속위원회)

- ①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대표최고위원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대표최고위원 직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24조(구성)

- ①당내 최고의 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
 3. 대표최고위원이 지명하는 최고위원
 4. 원내대표
- ③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으로 한다.
- ④최고위원회의 각호의 위원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기능)

- ①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의원총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3.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4.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 및 승인에 관한 의결
5.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7. 강령, 기본정책·당헌 등의 제, 개정안 의결
8. 당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 의결
9. 전당대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10. 각종 위원회 등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의결

제26조(소집 및 의사)

- ①최고위원 회의는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최고위원 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절 당무 집행기구

제28조(구성)

-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 시, 도당에 시, 도당 사무국을 둔다.

제29조(당무 집행기구)

- ①중앙당 사무처에 중앙 및 시·도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두며,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②대표최고위원 직속으로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 ③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

다.

④당무 집행기구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임명)

①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사무부총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 부처의 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31조(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

①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처 당직자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 당직자 임면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윤리위원회

제32조(구성)

①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 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기능)

①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의결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에 대한 심의, 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4조(구성)

①원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35조(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기능)

①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②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 선출
2. 국회 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5.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 사안의 심의, 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9. 최고위원 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③국회의장, 부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국회대책 및 국가 주요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의장)

- ①의원총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 ②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 1. 원내수석부대표.
 -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38조(소집)

- ①의원총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 ②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 ③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의장은 소속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회의)

- ①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③의원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 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의결정족수)

- ①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직접, 비밀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히 제적된다.
- ⑤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41조(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 ①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 ②제40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는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 ③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42조(지위)

- ①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43조(선출 및 임기)

-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권한)

- ①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 대책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5조(원내부대표 등)

- ①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 ②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③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④③항의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는 원내부대표가 대행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46조(구성)

- ①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 ③정책위원회에 원외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 ④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⑤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 ⑥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47조(기능)

- 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 심의 및 입안
 2.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 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국가재난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6. 민원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 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 회의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 조정
 3. 당, 정 협의 업무 총괄 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위원의 추천
-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임기는 1년으로 한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 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⑥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⑦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시, 도당

제1절 시, 도당 대회

제49조(시, 도당 대회의 구성)

①시, 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 도당 대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시, 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 도당 운영위원
3.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 소속 시, 도지사
5. 당 소속 자치구, 시, 군의 장
6. 시, 도당 사무국장
7. 당 소속 시, 도 및 자치구, 시, 군 의회의원
8. 시, 도당 위원장이 선임하는 책임당원

②시, 도당 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시, 도당 대회의 기능)

①시, 도당 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 도당 위원장 선출
2. 공직 후보자(시, 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3.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4. 기타 시, 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5.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②시, 도당 대회는 시, 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시, 도당 대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시, 도당 운영위원회)

제51조(시, 도당 운영위원회 구성)

①시, 도당 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 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시, 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 도당 사무처장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 소속 시, 도지사

5. 당 소속 시,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6. 당 소속 자치구, 시, 군의 장
7. 시, 도의회 대표의원

②시, 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기능과 권한)

①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 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 처리
2. 시, 도당의 당직 인사에 관한 심의, 처리
3. 시, 도당 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시, 도당 윤리위원회 및 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6. 시, 도당의 예산, 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 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시, 도당에 기능 및 권한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시, 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제53조(위원장)

①시, 도당 위원장은 시, 도당을 대표하고, 시, 도당을 총괄한다.

②시, 도당 위원장은 시, 도당 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 도당 위원장은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시, 도당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사무국 등)

①시, 도당에 사무국을 둔다.

②시, 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시, 도당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55조(지역위원회)

- ①지역 당원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 시, 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 시, 군별로 지역위원회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56조(구성)

- ①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총괄한다.
- ③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제57조(구성 및 기능)

- ①원외지역위원회 활성화와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협의회에 대표자 1인과 부대표 약간명을 둔다.
- ③협의회 대표와 부대표는 임기를 1년으로 한다.
- ④협의회 대표자 등의 선출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공직 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58조(공직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 ①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결로 중앙당과 시, 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필요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 후보자의 추천

제59조(후보자 추천 원칙)

①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④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당규로 정한다.

제60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지명을 통해 추대형식을 빌어 선출한다.

②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써 대통령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를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경선의 절차 및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대통령후보자 선출이 확정되면 이후 대통령선거 대책기구를 구성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정한다.

제61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자격)

①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2조(후보자의 지위)

- ①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 ②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3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 ①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 ②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③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이 전무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 및 차출할 수 있다.
- ④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 ①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 ②당해 선거의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 ③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이 전무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 및 차출할 수 있다.
- ④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시, 도지사후보자의 추천)

- ①시, 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 ②시, 도지사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이 전무 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회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 및 차출할 수 있다.

③시, 도지사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자치구, 시, 군의 장'후보자는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②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 시, 군의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지역구 시, 도의회 및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후보자는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④비례대표 시, 도의회 및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 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⑤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하고, 면접을 통해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⑥자치구, 시, 군의 장, 시, 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이 전무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 및 차출할 수 있다.

⑦자치구, 시, 군의 장, 지역구 시, 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⑧비례대표 시, 도의회 및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 도지사 및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 도의회 및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④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재,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각종 재, 보궐선거를 위한 공직 후보자는 중앙당과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1절 재정위원회

제69조(구성)

①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③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당 재정의 구성 및 관리와 집행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전한다.

제70조(자산)

당의 재정은 당비,국고보조금 후원회비 등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한다.

제71조(기능)

①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제①항의 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 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당 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①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비납부 기준 및 납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예산·결산위원회

제73조(구성)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과 결산을 심의 및 감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위원회를 둔다.

②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③예산, 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회계)

①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당의 모든 회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처리한다.

③예산, 결산위원회는 재정위원회가 분기별로 발송한 결산내역을 심의 및 감사를 실시한다.

제8장 정책연구소

제75조(정책연구소)

-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 법인의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연구소 이사장은 대표최고위원이 맡고 연구소장은 대표최고위원이 지명하여 연구소의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 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장 당헌 개정

제76조(개정의 발의)

- ①당헌의 개정 발의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77조(의결절차)

- ①당헌 개정안은 대표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또는 개최일 전 3일까지 공고한다.
-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 사정이 발생 때에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개정 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9조(당규의 제정 등)

- ①당의 가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당 대표인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대표최고위원의 발의가 있는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는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80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집행 기구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 ③시,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 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 ④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대표자 변경과 합당 시의 관련 서류와 인장의 인계)

- ①중앙당과 시, 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 도당은 시, 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정당 운영에 관련 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관련 서류 및 정당 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 ①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3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①시, 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2023.5.29.>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3년12월11일 개최될 제1차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의 임기)

①제1조(시행일)의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 등은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의초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초대 대표최고위원은 당 대표로 한다.

②초대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선출되기까지로 하며,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5년 이내에 개최한다.

제3조(당헌 개정에 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우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당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특례)

이 당규 시행 후 당규를 제정 및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우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위임)

①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부칙 외에 적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